

붙임

「여신거래기본약정서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12조(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)</p> <p>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(해당여신을 즉시 상환)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(3)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.</p> <p>③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,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(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) 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12조(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3년까지,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0년까지 (신규여신(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포함) 취급이 제한)되며,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용도외유용 적발정보가 제공되고, 타 금융기관의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<u>자금용도외 유용행위가 「형법」 제231조, 제234조, 제347조,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(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 또는 신고)됩니다.</u></p> |